

## 「관광진흥법」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

### 1. 여행업의 종류(안 제2조제1항제1호)

#### 가. 개정 이유

- 여행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“관광안내업”을 신설하고, 기존 여행업종의 등록요건의 완화, 업종 통합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창업을 촉진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#### 나. 개정 내용

- 여행업종의 명칭 변경(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)
  - 영업범위의 제한이 없이 종합적으로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“일반 여행업”의 명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“종합여행업”으로 변경함
- 여행업종의 통합(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)
  - “국외여행업”을 “국내외여행업”으로 변경하여 국외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함
- 여행업종 신설(안 제2조제1항제1호라목, 안 별표1)
  - 관광안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“관광안내업”을 신설하고 관광안내업 등록기준을 설정함
-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 완화 등 등록기준 변경(안 별표1)
  -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소규모 창업을 촉진하며, 영업불편을 해소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### 2. 여행업 종류 개정에 따른 등록기준 정비(안 별표1)

#### 가. 개정 이유

- 안 제2조제1항제1호개정에 따라 여행업 등록기준 정비

#### 나. 개정 내용

-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 완화
  -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
- “국외여행업”을 “국내외여행업”으로 변경
- 관광안내업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 설정
  - 개인사업자: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을 갖추고 사업장을 구비
  - 법인사업자: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임원 중 1인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추고 자본금 1,5백만원과 사무실을 구비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소규모 창업을 촉진하며, 영업범위 제한을 완화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### 3. 여행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기준 변경(안 별표2)

#### 가. 개정 이유

- 여행업자의 고의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여행객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여행업 행정처분 기준을 변경하여 등록취소 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임

#### 나. 개정 내용

- 여행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기준 변경(안 별표2)
  -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록취소 기준을 4차에서 2차로 변경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여행업자의 고의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여행객 피해를 신속히 구제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